

# 보충서면

사 건 2024카합50329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 청 인 간현임 외 6

피신청인 전진경 외 3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 1.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 가. 신청인 주장의 요지

신청인들은 정관 해석상 이사회가 이사의 연임 결의를 할 수 없고, 정관 변경 당시 이사회 결의로 이사 연임을 결정하겠다는 주관적 의사도 없었으며 총회에서 이사회 연임을 보고안건으로도 올리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주장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나. 변경된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사 연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들은 임원 선출 권한은 오로지 총회에 있을 뿐 이사회는 이사를

선출할 권한이 없고 이사회에서 연임을 결정하게 되면 회원들의 피선거권이 침해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1) 정관 제15조 제4항에 따라 이사회 전원 동의로 이사의 연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정관 제15조 제4항은 문언 자체로 그 의미가 완결적이고 명백합니다.

제15조(임기) ④ 모든 임원은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22년 개정된 정관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든 임원은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자는 모든 임원이고, 임원은 당연히 이미 한차례 임원 선출 절차를 통해 임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미 임원으로 선출되어 임원의 지위가 있는 자는 이사회 전원의 동의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연임, 즉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임원의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는 횟수는 2회로 제한될 뿐입니다.

이처럼 정관 제15조 제4항의 규정은 문언 자체로 완결적으로 이사의 연임에 대한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다른 해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2) 이사회에 연임 의결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 제12조와 규정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40조에 따라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지만 상법(상법 제382조 제1항)과는 달리 이사의 선임방법에 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이사는 반드시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지 않아도 되고, 사원이 아닌 자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사건 정관 개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라는 2022년 정관 개정 전까지 임원의 선출은 신규임원이든 연임이든 모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지만 2022년 제15조 제4항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전원의 동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 것이고, 당연히 그 자체로 적법합니다.

특히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연임 임원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선출되더라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은 여전히 이사회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 제15조 제4항에 따라 임원의 연임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여 이로 인해 정관 제12조 제1항의 규범적 효력이 부정된다거나 양 규정 상호간에 충돌이 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3) 오히려 신청인들과 같이 정관 제15조 제4항을 오해석할 경우 규정한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청인들과 같이 제15조 제4항의 이사회 전원 동의가 임원선출에 관

한 추가적인 절차적 요건이라고 해석하면 임원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 제15조 제4항에 따라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우선 받은 후, 다시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는 재적이사 과반수 동의,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이사회 추천을 받아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청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연임하는 임원은 이사회라는 동일한 의사결정 단위에서 의사 정족수가 각기 다른 두 번에 걸쳐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야말로 불필요한 절차의 중복일 뿐 아니라 규정 간 충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청인들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제12조에 제15조 제4항에 따른 연임 절차를 거친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추천 절차를 배제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어야 함이 당연한데도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달리 정관 제12조 제1항에 명문으로 규정된 이사회 추천 절차를 연임의 경우에만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더하면 신청인들의 해석은 명백하게 정관규정 내용을 상호합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정관 규정 사이의 충돌을 야기하는 것으로 각 규정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불합리한 주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4) 정관 제32조에 임원 연임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 의결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만으로 이사회에 연임 결정 권한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2022년 정관 개정 당시 제32조 이사회 의결사항에 예산 증가 변동사항, 특별사업 예산에 관한 사항, 임원 추천권 등을 추가하면서 임원

연임에 관한 사항을 누락되어 있는 것은 맞으나 임원 연임에 관한 사항은 제13호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충분히 포섭이 가능하고, 이 사건 피신청인들의 이사회 연임 의결 과정에서 정관 제32조 제13호에 따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제적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한편 신청인들의 주장처럼 정관 제32조의 각 항목을 열거적,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사회는 오직 신임이사를 추천할 권한만을 가질 뿐 임원 연임을 위한 의결은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정관 제15조 제4항에서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더라도 제32조 의결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사회에서는 이를 의결할 수 없다는 것이 되어 이사회 의결은 총회 의결 이전에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라는 신청인들의 주장과도 모순, 배치되는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5)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의 연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회원의 의결권과 피선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단법인의 이사의 선임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관의 규정과 같이 신임 임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 의결로 선출하고, 이미 임원으로 선출된 바 있는 임원의 연임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서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한 이상 단지 임원의 연임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정관을 변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회원의 의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총회 의결권은 정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한이므로 회원들

의 의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신청인들은 회원의 피선거권 역시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임 임원은 이사회가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되므로 임원 연임 규정과 회원의 피선거권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신청인들은 임원 연임으로 인해 회원이 이사로 선출될 기회를 잃게 되어 피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박탈된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다시 반복되는 것이지만 사단 법인의 이사는 반드시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지 않아도 되고, 사원이 아닌 자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신청인들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회원에게 동등하게 이사가 될 자격이 부여되고, 회원들이 모두 직접 참여하는 총회 절차를 통해서만 임원 선출이 가능한 것이어야 비로서 회원의 피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6) 정관 제31조에 따라 연임 대상이 되는 임원은 의결 절차에서 당연히 배제됩니다.**

정관 제15조 제4항이 이사회 전원의 동의로 연임을 결정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사회 전원의 동의에 연임 대상이 되는 임원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정관 제15조 제4항에 따라 임원 연임을 결정할 때에도 당연히 정관 제31조는 적용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연임 대상이 되는 임원은 의결 과정에서 배제되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관 제31조 위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2024년 이 사건 이사회 의결에서도 피신청인들은 자신의 연임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7) 카라 이사회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사들은 실체도 없는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인들은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권력을 독점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사회는 각각 독립적인 이사들이 모인 의결기구일 뿐입니다. 이 사들에게는 아무런 보수도 지급되지 않고 그 흔한 회의비마저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이사들은 이사로 선출되어 활동하기 전에는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던 개인에 불과하였고, 카라의 다른 회원이나 활동가들과 같이 동물권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는 외에 공통의 이념이나 조직 혹은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관계도 아닙니다.

신청인들은 잠재적 악용 시나리오라며 이사들이 마치 이사직 사수를 위해 권한을 남용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교수, 수의사인 피신청인들에게 “권력 독점을 위한 시나리오”까지 써가며 경제적 이익을 물론이고 다른 어떠한 사익도 실현할 수 없는 카라 이사직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본인의 본업인 약사로 돌아가면 적어도 배 이상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피신청인 전진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카라와 함께 국내 동물권 단체의 양대산맥이라 불리는 동물자유연대의 조희경 대표는 1999년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신청인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토록 악마화하고 있는 피신청인 전진경이 카라의 대표로 취임한 것은 2021년으로 피신청인 전진경이 대표직을 수행한 기간은 고작 4년이 되지 않습니다(소을

제24호증 동물자유연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모든 구성원이 무급 자원봉사자였던 2002년 아름뫼 시절부터 카라의 굿은 일을 도맡아 왔던 피신청인 전진경은 사람도, 돈도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노동조합 문제로 2,000여명의 회원이 탈퇴하기 이전 최대 18,000명의 회원이 모인 단체로 카라가 성장할 때까지 카라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 중 하나인데도 피신청인 전진경이 고작 4년간 대표를 맡아 왔다는 것만으로 다른 이사들과 함께 카라를 독점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피신청인들에게는 대단히 모욕적인 주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 (8) 소 결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정관 제15조 제4항은 명백하게 이사회에 임원 연임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고, 다른 임원 선출에 관한 다른 규정과도 어떠한 충돌이나 부가적인 해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에 반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 정관 제15조 제4항은 이사회 의결로 임원의 연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 (1) 이 사건 정관 개정의 경위

2021년 동물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카라의 조직이 점차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 동안 미비했던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이사회 내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내규를 정비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고 당시 집행부 실무진에서 작성한 규

정 개정안에는 이사의 연임 횟수, 임기 등에 관한 규정 변경안이 내용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 6.경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의 연임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변경 사항이지 이사회 의결 사항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따라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임원 연임 횟수 뿐만이 다른 정관 규정의 개정에 관해서도 논의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수용되어 연임 절차와 최초 선출 과정에서의 이사회 추천권을 비롯한 정관 규정 전반에 대한 개정 논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소을 제7호증의 1).

이러한 이사회 논의 결과 이사 선출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추천권을 부여하였고, 임원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대신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임원의 연임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총회 의결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게 된 것이었습니다(소을 제7호증의 2, 소을 제25호증 이사들 확인서).

**(2) 2022년 정관 개정의 취지는 카라의 사명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헌신성을 갖춘 임원을 선출하고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1)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카라는 동물에 대한 기존 구조 및 보호 활동 이외에도 동물권 활동과 관련하여 법제도 개선,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자들로 이사진을 구성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관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임원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카라의 활동목적에 부합하는 전문

성을 갖춘 자인지 여부를 이사회에서 우선 논의, 검토하여 총회에 추천하도록 하고(정관 제12조 제1항),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임원에 대해서는 그간의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이사회 상호간에 평가하여 대상자의 전문성과 헌신성에 대한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의 의결로 연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의 규정을 변경한 것입니다(정관 제15조 제4항).

즉 위와 같은 정관의 개정은 카라에 필요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선출하고, 이에 부합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연임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양된 이사진의 역량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에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부합하는 개정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연임을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는 경우 임원의 구성이 고정되어 폐쇄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연임의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역시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2) 이에 반해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전원의 동의 외에도 총회의 선출 절차를 거쳐야만 임원의 연임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이러한 개정 취지는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신청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임원의 연임에 대해서만 최초 선출에 비해 더욱 엄격한 이사회 의결 절차를 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관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으로 인해 이미 임원은 이사회 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총회에서 선출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와 감사는 재적이사 과반수,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

으면 총회 의결을 통해 선출될 수 있는데 연임의 경우에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보다 더 강화된 조건인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있어야만 총회 의결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더욱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신청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관 명문 규정 상 이사로 연임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전원의 동의(정관 제15조 제4항), 이사회 과반수의 추천, 총회 의결(정관 제12조 제1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동일한 이사회에서 그것도 정족수가 다른 두 번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3) 신청인들은 이사회 회의록 등에서 임원 연임 규정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사회 결의로 이사 연임을 결정하겠다는 주관적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관 개정에 관한 논의 자체가 실무진들이 작성한 연임 횟수 제한에 관한 이사회 내규 신설안을 토대로 진행되다 보니 실무진이 작성한 안건이나 초기 자료에는 연임 횟수 제한에 대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던 것 뿐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다른 회의자료에도 명시적인 내용이 누락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이사회에 임원 연임에 관한 의결권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22년 변경, 신설된 정관 규정의 내용 상 카라에 필요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선출하고, 이에 부합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연임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양된 이사진의 역량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취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명시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뿐 이사회에서 연임 규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소을 제7호증의 1, 소을 제25호증).

#### [소을 제7호증의 1 2022. 2. 정기이사회 회의록]

사무국장이 정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임순례 이사 / 명예대표가 왜 필요한지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애매하니 고려해봐야 할 것 같고, 변경안 중에서 이사회 의결사항 중 각 단위사업 중 30%의 예산변동도 논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을 어느 단위로 할지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팀 내 각각의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정할 경우, 예산이 백만 원 등 미미한 사업들의 30%도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하니, ‘단위’에 대한 재논의 필요합니다. 최호운 감사/ 단위사업에 대한 정의부분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석이사들의 요청에 따라 정관변경 수정안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3) 2023년 총회 과정에서 감사 최호운의 연임에 대한 총회 의결이 있었고 정관상 불요한 절차였으나 개정 후 첫 총회였기 때문에 실무자 착오로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정관 개정 후 총회에서 연임자에 대해 의결한 사실은 없습니다.

#### (4) 소 결

이상과 같이 2022년 정관 개정은 카라에 필요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선출하고, 이에 부합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연임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양된 이사진의 역량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변경된 규정 역시 이러한 취지에 객관적으로 부합하므로 이에 반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라. 임원 연임 결정은 총회에서 보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카라지회 조합원들과 관련자들의 총회 방해 행위로 진행되지 못한 것 뿐입니다.

2023. 11. 10. 카라지회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이후 카라는 카라지회 조합원들과 이들에 호응하는 외부세력들의 마타도어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카라지회와 공대위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신청인 전진경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서 카라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공격하고 있었고, 총회를 앞둔 상황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카라 이사진들은 카라지회의 무리한 요구사항조차 성실히 청취하면서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총회를 한달 여 앞둔 1월 말경 카라지회 조합원들은 임순례 이사와의 만남을 요청하면서 카라지회에서 공동대표를 추천하겠다는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소을 제26호증의 1 임순례 조 카톡 내용).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카라 이사진은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피신청인들의 연임 안건과 함께 카라지회의 요청에 따른 공동대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카라지회 간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이사회에 참석한 카라지회 간부들은 현재 카라의 운영에 대해 비판하면서 공동대표제로 운영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도 공동대표로 누구를 추천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소을 제26호증의 2 카라지회 간부 이사회 참석 사진). 카라지회에서 구체적인 공동대표를 추천하지 않는 이상 이를 안건으로 삼아 의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공동대표 선출에 대한 카라지회의 제안은 안건으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카라지회가 제안한 공동대표제는 카라지회가 공동대표로 선출할 자를 추천하지 아니하여 처리되지 못한 것임에도 이사회 이후 피신청인 전진경이 공동대표제를 반대하여 의결이 이뤄지지 못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피신청인 전진경과 카라 이사진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소을 제26호증의 3 카라지회 인스타그램).

총회 당일 카라지회 관계자들과 조합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이사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고성으로 인해 총회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라지회 조합원 등이 벌인 소란으로 인해 놀란 총회 참석자들 중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이석하기도 하였고, 카라지회 조합원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대의원들의 반발 역시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연임 보고에 앞서 일부 대의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카라 지회 조합원들은 현 이사진들은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해 셀프 연임을 결정하였다며 고성을 지르면서 비방을 이어갔기 때문에 임원 연임에 대한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정기총회에서 피신청인들의 연임 의결에 대한 보고는 카라지회 조합원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총회 방해 행위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것이지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고, 카라지회 조합원들의 셀프 연임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통해 사실상 보고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 마. 소 결 론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22년 총회 결의를 통해 개정된 정관에 따라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있으면 임원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임원 연임 절차가 변경된 것이고, 변경된 절차에 따라 2024. 2.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회 전원의 동의로 적법하게 피신청인들의 연임이 결정되었으므로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관한 어떠한 피보전권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4. **보전 필요성의 부존재**

### 가. 보전 필요성에 관한 판례의 태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단체의 대표자 선임 결의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에 있어서는 **장차 신청인이 본안에 승소하여 적법한 선임 결의가 있을 경우,** 피신청인이 다시 대표자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도 가처분의 필요성 여부 판단에 참작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14.자 97마1473 결정 등).

또한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마482 판결 등).

나. **보전 필요성에 관한 소명의 부존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카라를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무효의 결의에 터잡은 부적절한 직무집행을 하였으며, 피신청인 전진경이 금융실명법 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고, 피신청인 전진경의 비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동물복지가 하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신청인들이 보전 필요성의 사유라 주장하고 있는 카라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판단 및 결정 등은 그 자체로 **신청인들에게 어떠한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라 볼만한 사정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본건 가처분 신청은 보전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일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 그 밖의 보전 필요성 부존재와 관련한 사정

(1) 이 사건 총회 당시 피신청인들의 연임에 대한 의결 절차를 거쳤더라도 피신청인들은 무난히 연임이 의결될 상황이었습니다.

2024년 정기총회는 대의원 193명 중 178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으나 이후 안건 별 의결 절차에는 155 내지 162명의 대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였고, 이중 피신청인들을 비롯한 당시 이사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대의원은 98명이었습니다(소을 제2호증의 2). 임원 연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당시 피신청인들은 재적 대의원 과반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총회에서 무난히 연임이 의결될 상황이었습니다.

(2) 또한 신청인들은 2024년 총회 당시 임원 후보로 추천되었거나 임원으로 선출되려던 자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들의 연임 결정과 연동된 다른 후보자가 있어 그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신청인들로서는 피신청인들에 대한 연임안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더구나 현재 카라는 2024. 10. 10. 임시총회의 소집을 공고한 상황입니다(소을 제27호증 임시총회 소집 공고). **임시총회의 안건은 피신청인들의 임원 연임에 대한 것으로 비록 피신청인들에 대한 연임 의결은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지만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카라지회와 공대위의 태도에 비춰 이에 관한 법적 분쟁**

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카라 내부의 갈등 상황이 지속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불요한 절차임이 명백함에도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는 이사진의 결단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피신청인들에 대한 총회 의결이 진행되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 역시 소멸되는 것이므로 더더욱 이 사건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보전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4) 결국 신청인들은 현재의 권리관계가 유지되더라도 이로 인해 현저한 손해 혹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신청인들의 대리인들이 피신청인 전진경이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며 피신청인 전진경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을 이관 받아 조사한 서울마포경찰서는 신청인들이 혐의를 주장하는 사안들에 대해 모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한 사실까지 고려하면 신청인들이 보전 필요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사안들이 모두 허위에 기반한 근거 없는 비방에 불과하다는 점이 사실상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소을 제28호증 수사결과 통지서).

#### 4. 직무대행자 선임의 부당성

가사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필요성이 인정된다 가정하더라

도 이미 기존 준비서면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카라 정관 제17조 제1항은 대표이사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이미 정해두고 있고(소을 제7호증의 4), 피신청인들의 직무가 정지된다 하더라도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3인의 이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3인의 이사 중 1인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 대표이사의 직무 정지로 인해 카라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아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회종의 경우 카라와 피신청인 전진경에 대하여 “고인물, 썩은 물, 골드바 전진경, 3류 조폭”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며 사실 무근의 비방을 이어왔고, 평소 극단적인 발언과 편협한 행동으로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되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소을 제29호증 우회종 기사) 우회종이 카라의 대표이사 자리를 탐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카라지회 조합원들을 제외한 활동가들과 회원들에게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소을 제12호증) 피신청인 전진경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점까지 고려하면 우회종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될 경우 카라는 더욱 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사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대행자의 선임이 필요하다면 수년간 카라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카라 운영에 대한 이해가 높고, 현재 카라 이사의 지위에 있어 절차적, 실체적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정당성과 적절성을 보유하고 있는 서국화 이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결론

현재 카라의 전체 활동가는 70명으로 이중 40명의 활동가들은 피신청인들의 직무를 정지하고 우회종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해달라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소을 제30호증 40인 활동가 탄원서). 이는 카라 구성원의 과반을 넘는 활동가들이 카라지회와 공대위의 활동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법하게 연임이 결정된 피신청인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카라지회와 공대위의 입장을 대변하는 외부인이 점령군처럼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면 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분열과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직 동물권에 관한 사명으로 일생을 바쳐온 수 많은 이들의 수고가 조작된 오명에 더럽혀지고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의 지위와 연임을 권력에 빚대어 주장합니다. 그러나 보수도 받지 못하고 귀찮은 일 투성이에다 하지 않은 일로 비난 받는 지위는 결코 권력이 될 수 없습니다. 피신청인들 중 어느 누구도 사익을 위해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는 없을 뿐 아니라 그 직이 유지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얻게 될 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라 임원이라는 지위가 권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례는 오직 근로자라 주장하는 자가 사용자이기도 하여 단체의 사명과 비전, 존립과 발전에 앞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이의 없이 결정 할 수 있고, 다른 이가 일생을 바쳐 달성한 성과를 자신의 것인 것마냥 행세할 수 있을 때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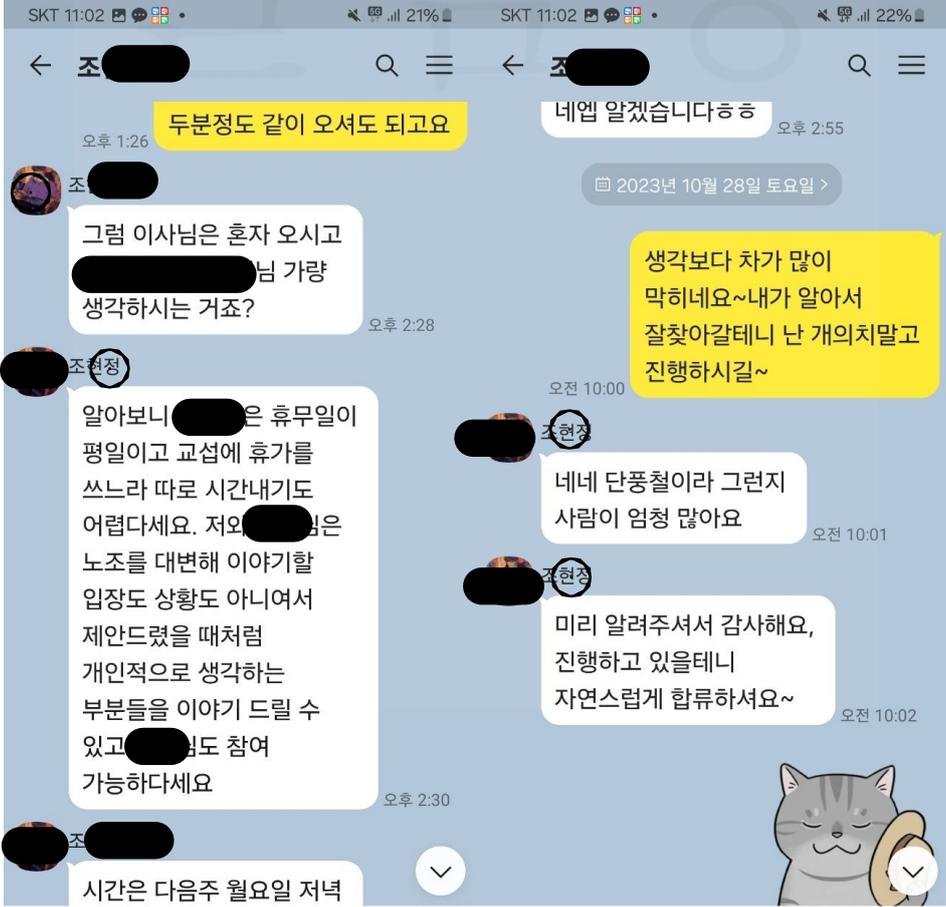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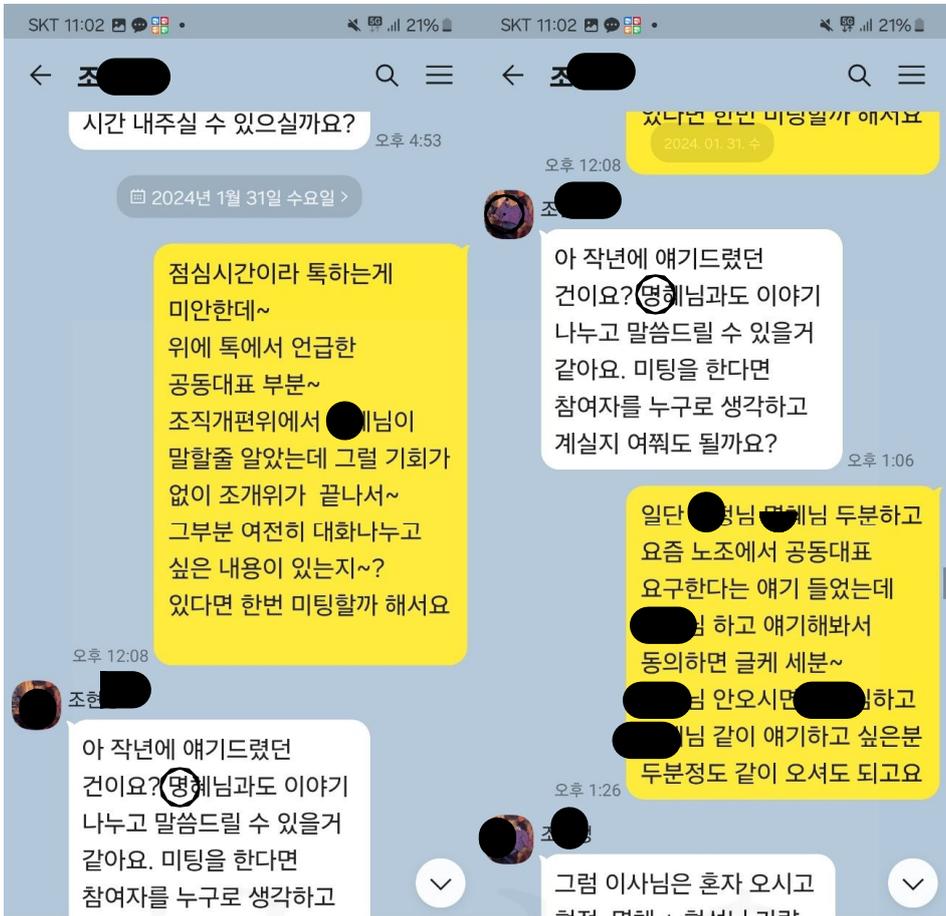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자체로 부당할 뿐 아니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신청인들의 소명되지 않은 손해보다 더욱 극심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 ■ ■

담당변호사 ■ ■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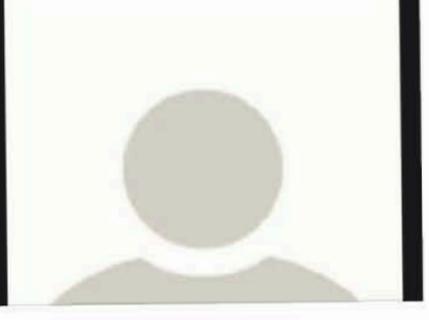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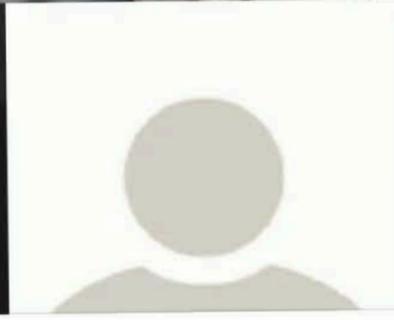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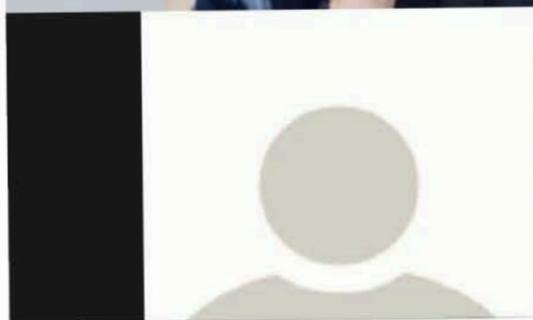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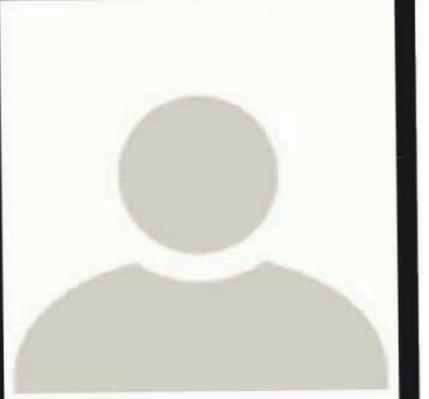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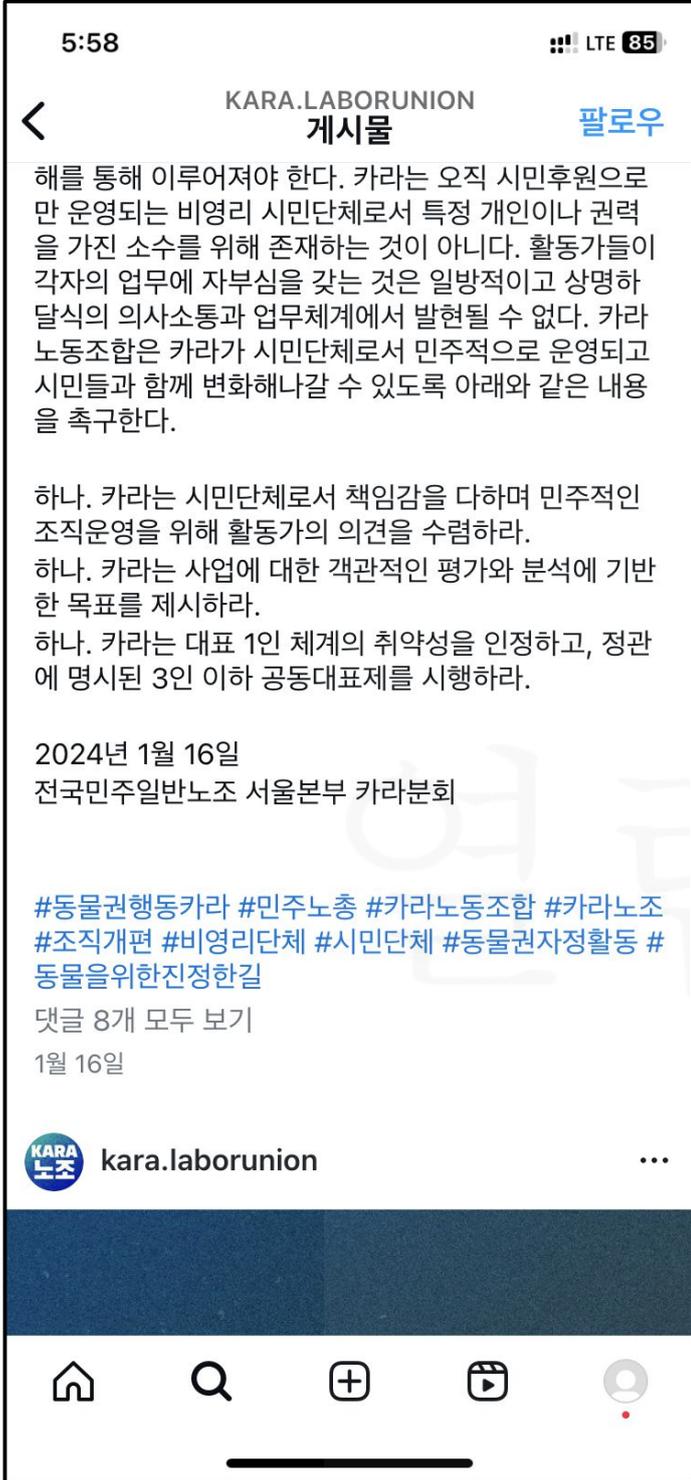
영남대학교



동물권행동  
카라



소을 제26-2호증





2024년 대의원님 중 총회에 불참하여 수임인을 지정하게 되신 분이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후원회원을 수임인으로 지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투표권을 위임할 대의원이 없다면, 아래 명단을 참고해 주세요

- 최민경: 5년차 카라 활동가
- 김나연: 7년차 카라 활동가
- 권나미: 9년차 카라 활동가



공고 | 임시총회 소집을 알립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를 대표하시는 대의원님들께 알립니다.

존경하는 동물권행동 카라를 대표하시는 대의원님들,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입니다.

그동안 카라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동물권의 리더로서 많은 바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시민 사회 속에서 흔들림없이 바로 서기 위해 카라는 이번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카라가 결속을 다지고 내실을 공고히 해 동물을 위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대의원님들은 부디 이번 임시총회 현장에 방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카라는 이번 임시총회를 계기로  
전체 회원과 시민 사회의 의사를 보다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시: 10월 10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추후 공지

방식: 온 오프라인 병행

의결사항 : 임원 선출의 건(추인)

\*소중한 대의원님 한 분은 100인의 후원회원을 대표하십니다.

일부의 정보 독점이나 허위 정보에 의한 오류가 없도록  
의결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사전 공유드리겠습니다.

\*직접 현장 참여를 꼭 부탁드립니다.

\*총회 실황은 녹화해 의사록과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2024년 09월 12일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 [redacted] 경찰서

재 2024-02392 호

2024. 9. 12.

수 신 : 전진집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 불송치)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시	2024. 7. 29.	사 건 번 호	2024-01 [redacted]
죄 명	업무상배임		
결 정 일	2024. 9. 12.		
결 정 종 류	불송치 (혐의없음)		
주요내용	말지와 같음		
담당팀장	[redacted]	영	0 [redacted]

※ 권징 종류 안내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결정 종류 안내>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범죄상 범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心神喪失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안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kopik.go.kr](http://www.ekopik.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청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국민없이 1331
- 수사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민없이 182)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 (나란, △입력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 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관할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 가능)

서울 [redacted] 경찰서



# 조계종이 서울대 총장실 항의방문 한 까닭

입력 2016.10.05 16:09

김혜영 기자 [구독 +](#)

♡ 0    💬 0



조계사, 봉은사, 중앙신도회, 종무원조합 등의 관계자들이 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한국 불교는 변태 불교" 등의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공

“서울대는 우희종 교수를 즉각 해임하라.”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은 성낙인 서울대 총장을 찾아온 스님과 불교 신자 70여명으로 때아닌 문전성시였다. 조계사와 봉은사 스님과 신도,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종무원조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근거 없는 비난과 조롱으로 한국불교를 폄훼하고 있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참회하라”며 총장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문제가 된 것은 우 교수가 낸 ‘쇼! 개불릭’(바다출판사)에서 한 발언이다. 지난달 초 발간된 이 책은 우 교수와 3명의 공동저자들이 종교 이슈를 다루는 동명의 팟캐스트에서 나눈 이야기를 담았다. 불교 신자인 우 교수는 현재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이자 서울대학교수불자모임인 ‘불이회’ 회장이다.

책에 나오는 우 교수의 표현들은 이렇다. “한국불교는 변태불교다” “늘 약자의 등에 빨대 꽂고 돈만 보면서 산다” “더는 제 역할을 못하고 일부 승려들의 재산 증식 사업 장소로 전락했다” “사찰 이면을 보면 암흑가 갱단 같다” “주요자리를 두고 3,000억, 5,000억의 돈이 오간다”.

반발은 거셴다. 조계종 종무원조합은 지난달 19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책을 전량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 몸을 맡길 당시 종무원과 스님들이 나와 공권력 투입 저지한 일을 두고 우 교수가 ‘쇼를 벌였다’고 표현한 대목 등이 “허위사실”이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날 서울대를 항의 방문한 이들은 ‘우희종 교수 주장에 의한 피해자 일동’ 이름으로 낸 성명서에서 “우 교수의 막가파식 발언으로 스님과 불자들이 줄지에 타락한 집단 구성원이 됐다”며 “수 백 명의 종무원들 역시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우 교수는 페이스북에 “표현이 독설인 점은 인정하지만, (허위사실로 지목된 각종 언급은)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에게 듣고 본 내용에 근거한다”며 “변태불교 발언은 물질은 풍부하나 가르침의 실천이 빈약한 현식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5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도 “제 주장에 잘못이 있다면 토론하면 될 일을 소송을 걸고 신도의 직장에 찾아와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불교적이지 않다”며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지겠다”고 말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조계사, 봉은사, 중앙신도회, 종무원조합 등의 관계자들이 5일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한국 불교는 변태 불교" 등의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공

쇼를 제29호증

## 카라 활동가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물권행동 카라의 활동가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대한민국의 동물보호 운동을 이끌어 온 자랑스러운 동물권 시민단체로서 저는 제 일터에 대하여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개관한 파주 더봄센터는 동물복지 개념에 기초한 선진적 동물보호소의 모델로서 시민과 기관의 방문 견학 요청 또한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동물을 위해 가야할 길이 아직 멀고 험난하기에 제게 주어진 일에 매순간 최선을 다하며 카라가 동물을 위한 변화를 하루 빨리 앞당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라의 대의원 7인이 가처분신청을 내어 현 카라 대표와 이사진의 직무를 정지시킬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청인들이 민주노총 카라지회의 공대위 위원장 우희종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과 울분을 넘어 저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카라에는 엄연히 체계란 것이 있고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운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갑자기 중단시키고 기존 대표와 이사들을 내보내고 낯선 인물을 직무대행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요.

카라 운영의 근간은 정관이며 이에 따라 회원, 임원, 사무국 산하 활동가들이 카라를 구성하고 총회는 총회의 의결을,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함으로써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된 기능을 해왔습니다.

신청인의 문제제기는 2024년 임원의 연임이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이지만, 현 카라의 정관은 '모든 임원은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것이 정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2024년 임원 연임의 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본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것이 매우 이상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카라에 대한 온갖 허위사실과 잘못된 정보를 끌어와 가처분신청서에 잔뜩 담아놓은 것은 더 이상합니다.

현장에서 뛰며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활동가로서 카라 대의원인 신청인의 카라에 대한 무지와 물 이해가 무척 아쉬웁니다만, 카라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 역시 사무국의 역할인 만큼 회원과의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깨달음도 얻습니다.

소을 제30호증

